

“내 집, 내 점포 앞 눈치우기” 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



# 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'16년 4/4분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추가 교부 통보

1. 자활지원과-16030(2016. 12. 21.)호와 관련입니다.  
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에 의거, 2016년 4/4분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붙임과 같이 추가 교부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사업명 :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
- 나. 기준보조율 : 국비50%, 시비25%, 구비25%
  - 종사자복지수당은 시비 100% 별도

**다. 금회교부액 : 금270,502,000원(금이억칠천오십만이천원)**

- 라. 교부 대상 : 24개구 30개 지역자활센터(별첨 교부내역 참고)
- 마. 교부 방법 : 관할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조치
- 바. 예산 과목 : (분야부문)사회복지 (정책사업명)저소득시민자활지원  
(단위사업명)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 
(세부사업명)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(편성목)자치단체등이전  
(통계목)자치단체경상보조금(100-308-01)

사. 교부 조건

-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,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환수토록 함.
-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고 집행 완료와 동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.
- 이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계좌로 입금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.
- 이 보조금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, 「자활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」 등 관계 법령·조례 및 지침에 의거하여, 적법·적정하게 집행해야 함.
- 자치구는 소관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.

※ 자활사례관리 신규지정 자치구(6)

- 자활사례관리비 부족분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에서 우

선 지급

- 2차 :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지급(자활사례관리비 국비 내시액 11,700천원)

붙임 2016년 4/4분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추가 교부 내역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구1-25(지역자활센터사업 담당 부서장)

주무관 **박근봉** 자활사업팀장 **정순중** 자활지원과장 12/21 **배기선**

협조자

시행 자활지원과-16046 ( 2016.12.21. ) 접수 사회복지과-32700 ( 2016.12.21. )  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(태평로1가) /  
전화 02-2133-7497 /전송 02-2133-0723 / bluepark21@seoul .go.kr / 대시민공개